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3. 3. 3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주민생활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- 1) 상위법령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- 2)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
- 제9조 조문명 변경

(현 행) 제9조(위원회 설치)

(개정안) 제9조(처우개선위원회)

- 제9조제1항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근거 ‘법 제3조의2’ 명시,
위원회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변경

- 제9조제2항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

-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함.

2)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(제9조제3항)

(현 행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

(개정안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 및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, 시행규칙을 삭제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만,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이 2022. 6. 22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7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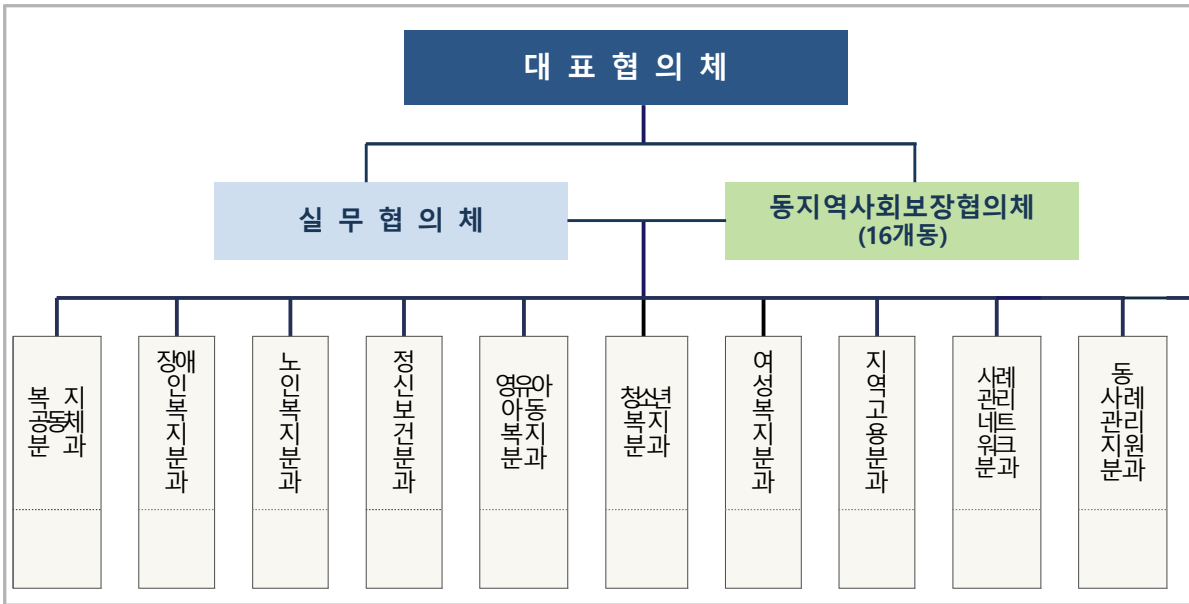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1.]

2.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



3.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

구분	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(비영리단체)
관련법령 등	1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.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3.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규정
설립형태	비영리단체
목적사업	1. 지역의 사회보장과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위한 활동 2.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, 시행, 평가 등 심의·자문
조직구성	1. 대표협의체(22명) : 공공위원장: 구청장 / 민간위원장: 이성환 2. 실무협의체(28명) : 위원장 : 하강택 3. 실무분과: 11개 분과, 154명 4.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:16개동,234명
운영재원	보조금
예산 (23년도 보조금)	총 130,287천원 1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
운영인력 (사무국직원)	1명(사무국 간사) 1.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심의·자문 2. 지역사회보장, 사회복지지표 조사 3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.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